

신분평



THE WAY CITY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문

대출대상	- 계약금(임차보증금 10%이상)을 완납한 임대차계약자 중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농협 대출 취급기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대출신청일 일 시	2025년 11월 13일(목) ~ 2025년 11월 17일(월) 09:00 ~ 16:00까지 [사전예약필수] ※ 지정일 외 대출 신청 불가												
대출신청장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 <신분평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대출한도	임대보증금 x 49%이내 (중도금 1~5회차)												
대출기간	34개월(2025년 11월 28일 ~ 2028년 09월 28일)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대출기간동안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료일에 대출원금 전액 상환하는 방식)												
대출금리	3.80% (예탁금전국평균금리(잔액) 6개월변동 + 가산금리)												
부대비용	<p>◎수입인지세 고객부담금 : 75,000원(중도금대출신청총액 1억원 초과 기준)</p> <p>◎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구입자금보증서 보증료 : 시행사 선지급예정</p> <table border="1"> <tr> <td>예시)</td> <td>대출금액</td> <td>146,951,000원</td> </tr> <tr> <td></td> <td>예상보증료</td> <td>541,706원</td> </tr> </table> <p>※ 상기 보증료는 예상금액으로 보증료우대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0.13%) x 보증기간(1,035일)에 해당하는 일수 / 365일}</p>	예시)	대출금액	146,951,000원		예상보증료	541,706원						
예시)	대출금액	146,951,000원											
	예상보증료	541,706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p>임대차계약서상 중도금 납부일정 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차수</th> <th>1호차 (임대보증금 x 10%)</th> <th>2호차 (임대보증금 x 10%)</th> <th>3호차 (임대보증금 x 10%)</th> <th>4호차 (임대보증금 x 10%)</th> <th>5호차 (임대보증금 x 9%)</th> </tr> </thead> <tbody> <tr> <td>일정</td> <td>2025.11.28</td> <td>2026.04.30</td> <td>2026.10.30</td> <td>2027.03.31</td> <td>2027.08.31</td> </tr> </tbody> </table> <p> <input type="checkbox"/> 이자후불제 사업장으로 대출기간 동안 시행사가 대납(매월20일)후 입주 시 고객(채무자)이 정산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이자납부의무는 고객(채무자)에게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중도금대출기간 중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다음 회차부터 중도금 실행이 불가하므로 중도 상환시 잔액(일만원이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시 취급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input type="checkbox"/> 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본 대출금으로 인하여 타 금융기관의 DSR 규제 및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모든회차)시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 기존보유대출 연체 또는 지연 발생하게 되면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p>	차수	1호차 (임대보증금 x 10%)	2호차 (임대보증금 x 10%)	3호차 (임대보증금 x 10%)	4호차 (임대보증금 x 10%)	5호차 (임대보증금 x 9%)	일정	2025.11.28	2026.04.30	2026.10.30	2027.03.31	2027.08.31
차수	1호차 (임대보증금 x 10%)	2호차 (임대보증금 x 10%)	3호차 (임대보증금 x 10%)	4호차 (임대보증금 x 10%)	5호차 (임대보증금 x 9%)								
일정	2025.11.28	2026.04.30	2026.10.30	2027.03.31	2027.08.31								

제출서류 : 모든서류는 2025년 10월 30일이후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증명서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추후 다시 제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p>주택보유수 산정을 위하여 배우자가 있을 경우 필히 같이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납입영수증</p> <p>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p> <p>* 모바일신분증 제외</p> <p>3. 인감도장</p> <p>4.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분)</p> <p>* 대리인,온라인발급 제외</p> <p>5.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주소변동포함)</p> <p>① 임대계약자 + 배우자 동일세대의 경우 등본 - 세대주 제출 초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각각 제출</p> <p>② 임대계약자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등본 - 임대계약자 및 배우자 각 등본 제출 초본 - (임대계약자+배우자)의 세대원 전원 각각 제출</p> <p>*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본인+(세대분리된)배우자 각각의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p>	<p>해당 항목 택 1</p>	<p>급여소득자</p> <p>사업소득자</p> <p>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p> <p>연금소득자 (국민,공무원, 군인,사학)</p> <p>기타소득자 (무소득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직인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각 최근 2개년) ※ 1년 미만의 재직자 및 당해 이직자는 재직증명서+급여발생 전체기간의 급여명세표(회 사직인필)+급여통장거래내역(은행직인필)으로 소득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최근2개년) ※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사업자 는 아래의 기타소득자 서류 추가제출 ◎위촉계약서 등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각 최근2개년) ◎연금증서 사본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사본추가제출 <p>*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기타소득자 해당 항목 서류 준비</p>
6.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7. 국세 납세증명서 1부			
8. 국세 납부내역증명 1부(최근 3개년)			
9.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최근 3개년)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 1577-1000로 FAX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자(무소득자)는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반드시 제출 + ◎ 사실증명원 발급후 아래 3가지 중 증빙 가능한 자료와 함께 제출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 1577-1000로 FAX요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1년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최근 1년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3. 최근 1년 연말정산용 카드사용금액확인서 (홈택스 발급분)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인 피부양자의 경우 사실증명원 생략가능</p>	
13. 소득증빙서류(우측 해당사항 참고)			

- 유의사항**
- 대출신청시 반드시 계약자 본인(공동계약자 포함)이 직접 자서를 해야 합니다.
 - 본 대출의 만기는 2028년 09월 28일임을 확인합니다.
 - 이자납입의 주체는 채무자(임대차계약자)이나, 본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사업장으로 최초기표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본 사업의 시행사가 이자를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채무자(임대차계약자)가 이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대납기간 중 시행사의 이자납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자납입 의무는 채무자(임대차계약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는 입주시점에 채무자(임대차계약자)가 일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시행사의 이자납입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임대차계약자)의 개인 신용정보상 피해 (연체기록, 신용등급 하락 등)는 채무자(임대차계약자) 및 시행사의 책임으로 대출취급기관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대출은 주택 수 확인 필요한 대출로 채무자(임대차계약자) 및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내방 및 (주택 수 확인을 위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본 대출은 세대당(부부합산)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 본 대출은 세대당(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 20.06.17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내 3억원 초과 APT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 본 대출 취급 이후 추가 주택매입 등을 통해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인 경우 20.06.17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내 3억원 초과 APT 소유자가 되는 경우 대출금 상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은 HUG임대보증금 반환목적의 보증서 대출로 보증신청인을 포함한 세대당 지역무관하게 1건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중 채무자(임대차계약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또는 계약의 해지, 해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채무자(임대차계약자) 본인에게 반환되는 분양대금은 중도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잔액(있을 경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취급기관, 시행사, 시공사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 할 경우 대출금 상환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의 실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은 대출 접수 후 지점별로 임의배정 됩니다.
 - 중도금대출 신청 관련은 당 농협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출 심사기준(신용상태, 소득증빙 자료 등)에 의한 자격 미달 및 기타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기간 중 계약자의 신용 저하 등의 사유로 은행의 대출기표가 중간에 중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납 중도금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협 금융기관	☞ 문의전화
일산농협	031-839-8551,8553
고양축산농협 원흥지점	031-966-6104
신도농협 삼송유통센터지점	02-358-7456
내수농협	043-214-0400
청주농협	043-294-1101
오송농협 의료단지지점	043-238-2999
오송농협 쌍청지점	043-236-2226
오창농협 과학단지지점	043-217-2628
충북원예농협 충주공판장지점	043-853-6857
광주농협	062-250-5000
서청주농협 솔밭지점	043-258-5700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총 11개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면 전화 집중으로 인한 불편 없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문의처 농협과 실제 대출 취급하는 농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도금대출(주택임차자금보증) 보증료 안내

귀하께서 계약하신 주택임차자금보증 보증료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래 안내 내용의 서류는 대출 신청 당일 제출해야하며, 당일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접수 불가)

1) 보증료 : 채무자(임대차계약자)부담이나 중도금 대출 실행시에는 “시행사”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

구 분	보증료율	비 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 0.13%	채무자(임대차계약자)부담 (시행사 선지급 / 추후 개별 정산)

▶ **개별할인대상** : 계약자의 보증신청일 자격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상자 확정은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증복할인 불가)
 ↪ 할인 대상 서류 중 대출접수 시 관련서류 제출(중도금 대출서류와 증복되는 서류는 추가제출 생략)

2) 보증료 우대

보증료율 우대가구	적 용 대 상	제 출 서 류
신혼부부 (40% 할인)	*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한부모가족 (60% 할인)	*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인 경우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40% 할인)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자. * 배우자가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을 취득한자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출입국관리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40% 할인)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이상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유족포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피해자 ►5.18민주유공자	* 각 대상자별증서 (유족증 사본) 또는 각 대상자 확인원(유족증확인원) 제출
의사상자 (40% 할인)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유족 포함)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
다자녀 가구 (40% 할인)	*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모범납세자 (10% 할인)	* 모범 납세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이내, 1개월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저소득 가구 (40% 할인)	* 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장애인 가구 (40% 할인)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고령자 가구 (60% 할인)	* 보증신청인이 단독세대주인 65세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노인부양가구 (40% 할인)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이상이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